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 
원고, 상고인 ○○○지역주택조합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스로  
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7인  
피고,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 
담당변호사 박구용  
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. 11. 6. 선고 2025누10088 판결  
판 결 선 고 2026. 6. 5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사안의 개요

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는 광주 북구 (주소 생략)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.

나. 원고는 2017년 6월경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(2021년 7월경 조직이 개편되어 피고로 통합되었다. 이하 개편 전후를 통틀어 '피고'라 한다)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급수공사(이하 '이 사건 급수공사'라고 한다)를 신청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7. 6. 28.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구 「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(2019. 12. 15. 광주광역시 조례 제5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이 사건 조례'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비 249,162,610원을 부과하는 처분(이하 '중전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이 금액은 구 「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」(2017. 1. 17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-13호)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.

라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그 결과 중전 처분 중 수도관 구경 150mm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·확정되었다(광주지방법원 2022. 4. 1. 선고 2021구합14585 판결, 광주고등법원 2022. 10. 6. 선고 2022누10817 판결).

마. 피고는 2023. 6. 21.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급수공사 중 수도관 구경 150mm 부분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99,708,400원을 부과하는 처분(이하 '당초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이 금액은 구 「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」(2021. 12. 3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488호)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.

바. 피고는 2025. 8. 6.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56,567,160원의 재부과를 통지하였는데, 위 금액은 개정된 「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」(2025. 6. 25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-239호)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(이하 당초 처분 중에서 감액하여 재부과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## 2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,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.

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관련 법령

1)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(수도법 제70조).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(수도법 제38조 제1항).

2)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본문은 '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한다'고 정하고, 제11조에서 급수공사비를 자재비, 시공비, 도로복구비, 설계수수료, 준공검사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로 하되(제1항),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(제3항 본문). 또한 이 사건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(제6조 제1항), 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(제12조 제1항 본문).

#### 나. 구체적 판단

1) 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,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(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568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 급수공사에 관한 공사비는 정액제로 부과되므로,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에 급수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도 산출할 수 있는바,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.

3)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#### 4. 결론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오경미

대법관 권영준

주 심 대법관 엄상필

대법관 박영재